

울산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가단4897(본소), 2020가단113500(반소) 판결 [(본소)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유권이 전등기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

담당변호사 박성진

변론 종결 2020. 11. 12

판결선 고 2021. 1. 14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1,304㎡에 관하여 2008. 8.6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0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"피고"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"원고"라고 한다)에게
4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0반소 :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의 남편 D은 2008년경 울산 울주군 C 답 1,304㎡(이하 "이 사건 부동산"이라 한다)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, 피고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지 않고 있는 동안 D은 2018. 12. 31.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연락처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.

나. 원고는 D의 사망으로 어쩔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다.

위 지출비용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.

2. 판단

을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, 즉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1. 11.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는 2008. 9. 5.경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, D은 2011. 11.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[반소청구에 대한 판단] 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 윤원묵

별지